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김영식·김병욱·권은희

이종성 · 김희국 · 윤두현

박대출 · 김형동 · 정희용

구자근 • 윤한홍 • 송언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간만 기존의 고금리 대 출을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 간에도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음.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2010년 시행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학기 5. 7%, 2학기 5.2%에 달해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이에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법률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를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	
(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u>2009년 12월 31일까</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u>다</u> .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u><</u> 삭 제>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u> 가진다.</u>	